

문서번호	재무과-6446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계약팀장	재무과장	기획경제국장
박순재	박만우	김종구	04/11 고재풍
협 조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

2016년도 상반기 불용물품 처분계획



기 획 경 제 국

(재 무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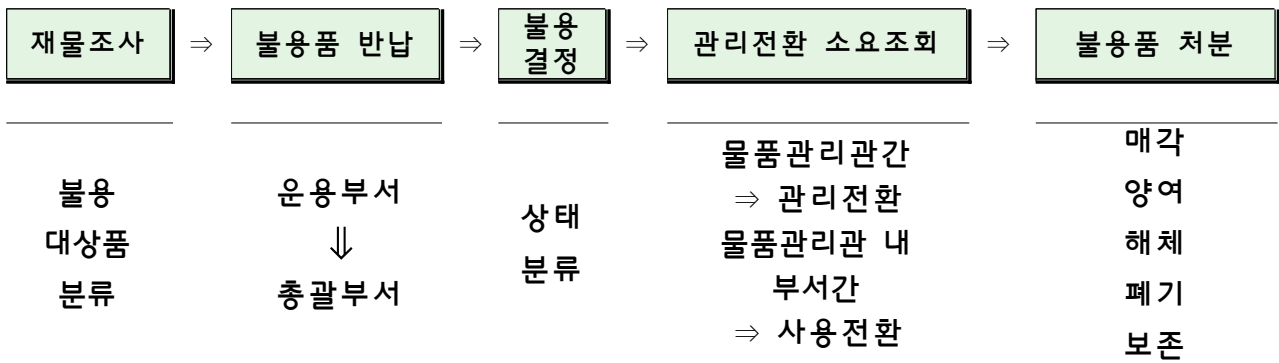
2016년 상반기 불용품 조사 및 처분계획

모든 부서·동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물품 중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등을 전수조사하여 불용결정 후 매각·양여·해체·폐기 등을 통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7조(불용의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불용물품 처분)
- 서울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72조 및 73조(불용품의 매각)

2 불용결정 및 처분절차



3 물품 불용 결정

가. 불용물품 조사

새울 물품관리시스템 내 부서별 물품 보유현황에 등록된 물품 중,

1.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사용불가능품) : 노후화, 파손 등 폐품
2.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사용가능품) : 잉여품, 과장품 등

※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용결정 요청 (수리비용과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 발생빈도 등)

※ 내용연수가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제외

나. 불용결정기준(부서·동 물품담당) -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72조

-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7) 수선을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내용연수가 미경과된 물품 불용시 불용사유 필수

다. 불용결정요청 : 각 부서·동 물품관리 담당 -> 불용결정통보서 제출

4

물 품 보 유 현 황

(2016.4월 현재)

물품보유현황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대장등록기준
32,201점	일반승용차	33대	데스크톱	2,535점	단가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
	화물트럭	57대	LCD모니터	2,484점	
	쓰레기 수거용트럭	17대	작업용 의자	4,199점	
	복사기	85대	이동형파일서랍	1,101점	
계	기타 물품 포함 836점		기타 물품 포함 31,365점		

5

세 부 추 진 일 정

가. 추진기간 : 2016.4.12(화) ~ 2016.5.13(금)

나. 물품조사 : 2016.4.12(화) ~ 4.22(금)

다. 불용결정 : 2016.4.25(월)

라. 처분방법 : 「물품관리법 시행령」 78조-불용품 매각방법 및 특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 기준」 - 라. 불용품의 매각
「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3조-불용품의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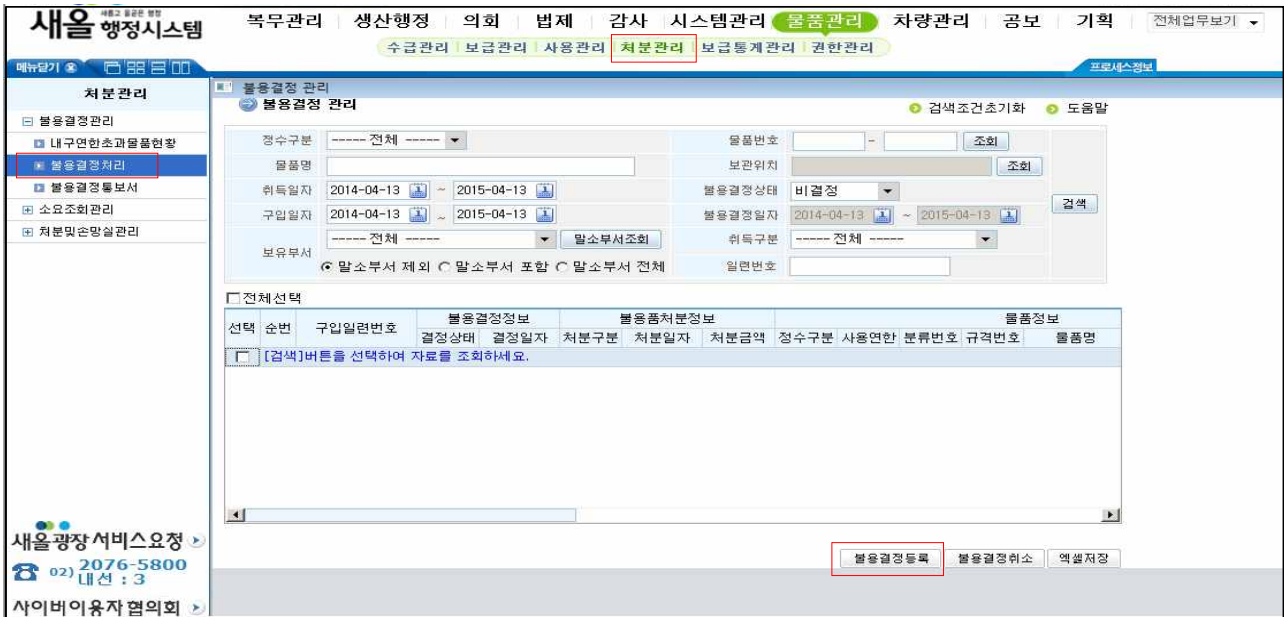
마. 추진일정

세부내용	일정	비고
물품조사 및 불용결정요청	2016.4.11(월) ~ 4.22(금)까지	각 부서·동
관리전환 소요조회	2016.4.22. ~ 4.27.	재무과
불용품 매각업체 선정	2016.4.28. ~ 5.6.	재무과
불용품 반납 및 매각	2016. 5.9(월) ~	업체선정 및 일정 공지

6 행정사항

가. 불용결정요청

방법 : 서울 행정시스템 - 물품관리 -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



나. 불용결정통보서(요청서)제출 : 2016.4.11. ~ 2016.4.22.(금)까지

방법 : 서울 행정시스템 - 물품관리 -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통보서

다. 불용물품 반납 및 인계 : 매각업체 선정 후 일정 공지 예정

※ 데스크톱 및 노트북은 부속품 제거시 인수인계가 불가하며, 하드디스크는 디지털 정보과(내선:7228)와 협의 후 반드시 FORMAT 후 불용품 반납

붙임 1. 내용연수 1부.

2. 정수·비정수 물품보유현황 각 1부.